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송정빈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각 수도사업소별로 구성·운영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로는 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민원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가 어렵습니다.

또한, 현행 조례 위반 시 제재의 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의 해석이 난해하고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에 대한 반감 등으로 민원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바,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.
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심의규정을 명확히 하며, 과태료 규정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입니다.

 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